

제41차 (법인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

일 시 2026년 2월 28일 (토)

장 소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 (5층)

시 간 오전 10시



바른투레생협

www.baruncoop.co.kr

제41차(법인27차) 정기 대의원총회 자 료 집

- ▶ 총회일 : 2026년 2월 28일
- ▶ 장 소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

협동조합의 정의 · 가치 · 운영원칙

✓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를 말한다.

✓ 기본적 가치

- 자조(Self-help)
-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 민주주의(democracy)
 - 평등(equality)
 - 공정(equity)
- 연대(solidarity)

✓ 윤리적 가치

- 정직(honesty)
- 공개(openness)
-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 for others)

✓ 운영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협동조합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목 차

1. 연혁 -----	5
2. 제40차(법인25차) 정기총회 의사록 -----	8
3. 의안 심의	
제1호의안 2025년도 종합 감사보고 승인의 건 -----	11
제2호의안 2025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 처리(안) 승인의 건 -----	13
제3호의안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54
제4호의안 2026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	68
제5호의안 임원선출 및 승인의 건 -----	69
4. 바른두레생협 정관 -----	71

바른생활 설립 취지문

현재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상품의 홍수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활물자는 언제든지 가까운 시장이나 상점에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젖어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엄청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과 강이 오염되어 새가 죽고 등이 굽은 물고기가 생겨났습니다.

땅이 죽어 농산물이 오염되고 마음 놓고 마실 물, 숨 쉴 공기조차 찾기 힘들 지경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의 편리와 맞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편리와 풍요만을 위해 우리들은 돈과 물질을 가장 우선시 하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우리 생존의 터전인 자연이 파괴되어도 상관없었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는 불신과 경쟁도 서슴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활양태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공생, 이웃 간의 신뢰회복, 협동적인 생활공동체 형성만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진실로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생각하고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 만드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는 바른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환경에 이로우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와 생활물자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일을 협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생활물자에 바로 협동과 공생의 의미를 담아낼 것입니다. 또한 생활물자의 개발과 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바른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들이 모인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이에 바른생활협동조합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2000년 2월 28일 / 바른생활협동조합 법인설립발기인회

바른 두레 생협이 걸어온 길

	5월 13일	발기인회 개최
1985년	5월 22일	창립총회 개최, 임원진 구성(56명 참석)
	12월 18일	소협 중앙회 회원조합(제5-3호)으로 가입
1986년	5월 29일	제2차 정기총회 개최
	2월 11일	국민일보 보도 “무점포 소협으로 성공”
1987년	3월 3일	소협중앙회 2차 정기총회에서 우수조합으로 수상
	3월 23일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생협 전국연합회) 가입
1988년	5월 29일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989년	5월 29일	제5차 정기총회 개최
	3월 16일	제1차 도농 만남의 잔치 개최(속달리 납작골, 80명 참가)
	4월 10일	바른생협 회보 창간호 발행(더불어사는 생활공동체)
1990년	6월 1일	중앙회 사업부 당 조합 사무실로 이전 업무개시
	8월3일~5일	일본 생활클럽생협 지바조합 한국연수단 조합원 집에서 민박
	8월 17일	사무실 이전 안양3동 695-52(지하 50평)
	12월 31일	사업자 등록(123-82-04867)
1991년	1월 28일~2월3일	일본 생활클럽 생협 연수 조합원 11명 참가
	10월5일~6일	천주교구수원교구 여성연합회 주최 “사랑의 바자회”참가
	1월 1일	폐품 재활용 운동 전개(우유팩 모으기, 폐식용유 모으기, 건전지 수거)
1992년	1월 19일	산친구들(산악회) 수리산으로 첫나들이
	2월 14일	제1회 살림강좌 개최 “여성시대” 김영주
	6월 12일	안양5동 627-176 사무실 개소식
	2월 2일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 가입
1993년	3월 7일	우리밀밭 밭기 조합원 가족나들이 개최
	6월	안양생활소비자협동조합 명칭 바른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
1994년	4월 16일	안양지역 지구의 날 행사 참여
1995년	2월 22일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1996년	4월 9일	산본지소 개소
	1월 20일	생활재위원회 시작
	4월	지역모임 시작
	5월 30일	산본지소 폐쇄
1997년	8월 24일	상주 「땅을 지키는 모임」 견학 후 수재의연금 전달
	11월	어린이 겨울캠프 개최(장소:원주생협)
	6월 13일	단오절 행사 경기도 남양에서 개최(바른, 안양Y생협)
	11월 29일	공동구입 부분 수도권연합회 사무실로 이전(시흥시 목감동)
	12월 5일	신규 점포 오픈(안양5동 627-102, 30평)
2000년	2월 28일	바른생활협동조합 법인 창립 총회
	7월 23일	신규조합원 이용설명회
2001년	8월 1일~4일	생활재위원 일본 그린코프생협 연수
	12월 5일	홈페이지 개설(baruncoop.or.kr)
	1월 24일~25일	어린이 겨울캠프 진행
	4월 11일	매장위원회 시작(안양)
2002년	6월 6일	바른생협인 한마당 개최
	10월 2일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조작벼 재배 규탄 시민대회 참가
	10월 13일	우리쌀지키기 만민공동회 참가
2003년	1월 15일	아토피소모임 시작
	2월 26일	18차 정기총회 개최

◀ 조합원 당신이 생협입니다 ▶

	3월 17일	청계산 생태공부 모임 시작
	5월 31일	영통매장 개점
	10월 16일	생협전국연합회 2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 수상
	2월 24일	제19차(법인 5차)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2004년	8월 20일~22일	어린이 여름캠프
	12월 10일	안양매장 5주년 기념행사
	5월 22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2005년	5월 17일	영통매장 이전 및 행사
	9월 23일	안양 어린이생태교육모임 진행
	12월 16일	안양매장 이전 및 행사
	5월 10일	홍성 장곡면 대현리 마을과 자매결연식 체결
2006년	6월 28일	평촌매장 개점
	7월 22일~24일	홍성 정다운 농장에서 어린이 여름캠프 진행
	1월 3일~5일	홍성 생산자 자녀 초대 겨울캠프
2007년	7월 11일	천천매장 개점
	10월 1일~22일	활동가 양성교육 4회 진행
	1월~2월	서해안 기름제거 활동전개(총 5회)
2008년	5월 31일	전·현직 임직원 만남의 날 개최
	8월 25일	동탄매장 개점
	5월 13일	인덕원매장 개점
2009년	11월 4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과 자매결연 및 조인식
	12월 9일	제주생산지에 도서 및 의류보내기 활동 전개
	12월 10일~11일	상주 여성생산자와의 교류회
	2월 18일	복지를 생각하는 모임 시작
	5월 5일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2010년	7월 3일~4일	성주 참외생산지 일손돕기
	9월 8일	매탄매장 개점
	11월 24일	평촌매장 확장 이전식
	3월 21일	일본지진피해 돕기 모금활동 전개
2011년	5월 20일	생산지 일손돕기 활동시작(총 5회 진행)
	11월 19일	김장나눔행사
	11월 23일~27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3차 교류회
	2월 22일	바른생협에서 바른두레생협으로 명칭 변경
2012년	3월 21일	반찬나눔 활동시작
	6월 28일	산본매장 개점
	11월 3일	안양지역 협동조합 한마당
	5월 30일	안양지역 협동조합 한마당
	6월 4일	동탄점 이전 행사
	7월 1일~ 2일	천천점 이전행사
2013년	7월 21일~24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과의 어린이 캠프 충남 홍성에서 진행
	7월 25일~28일	후쿠시마 리프레쉬 투어
	10월 17일	경기지역 협동조합연합회 창립
	11월 6일~10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정기교류 및 후쿠시마 부흥지원행사 참가
2014년	7월 23일~26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과의 어린이 캠프 일본 가나가와에서 진행
	8월 18일	호매실매장 개점
	11월 28일~30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후쿠시마 부흥지원행사 참가
2015년	5월 21일	창립30주년 기념식
	7월 4일	창립30주년 심포지움(컨텍스)

	8월 25일	영통매장 정육코너 입점(홍성유기농)
	8월 28일	숍&숍 따복공동체 입점(영통점, 평촌점, 동탄점, 인덕원점, 호매실점)
2016년	12월 31일	호매실점 폐쇄(숍&숍 따복공동체 폐쇄)
2017년	6월 30일	숍&숍 따복공동체 입점 (안양점)
	6월 30일	산본점 폐쇄
	11월	협성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산학협력 협약서 체결
2018년	3월 21일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협약
	5월 16일~17일	창립33주년 기념행사
	5월 30일	숍&숍 따복공동체 입점 (천천점)
	8월	매탄점 공유냉장고 운영
	10월 15일	수원시 생명산업과 업무협약
	12월 24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2019년	3월 01일	숍&숍 따복공동체 입점 (매탄점)
	5월 25일	안양점, 영통점 외 5개 매장 법인지점등기 완료!(평촌, 천천, 동탄, 인덕원, 매탄 매장)
	6월 04일	동탄점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완료!
	7월 22일	동탄 매장 '생협플러스' 운영 업무 협약
	10월 17일~19일	일본가나가와생활클럽 교류
2020년	5월 21일~22일	35주년 기념 비타민 나눔기부 행사
	6월 10일	본부 사무실 이전
	6월~12월	사회적 경제기업 협약매장 입점사업 1단계 확정
	7월	농식품진흥원 먹거리 보장사업 정부지원 확정
	8월 12일	참살이 협동조합 공정무역 제품구입 소비촉진 업무협약
	9월~12월	사회적 경제기업 협약매장 입점사업 2단계 확정
	9월 1일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11월 13일	화성시 공정무역 협의회 공정무역 기관협약체결
2021년	2월	수원햇빛발전 출자 및 펀드가입
	6월 11일	안양노인복지관 업무 협약
	10월 21일	청솔로터리클럽 업무 협약
	11월 16일	바른소식지 웹자보 발간
	12월 1일~3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참가
2022년	3월 3일	명학점 오픈행사
	5월 25일	안양점 본점 이전
	11월 22일	사회적경제기업 협약매장 입점지원 공로상 수상
2023년	6월 22일	두레생산자회 이사회 합동 개최
	9월 16일	신협 '협동이데이' 플리마켓 참가
	11월 18일	일본 생활클럽 교류 협약 및 후쿠시마 부흥지원행사 참관
2024년	2월 10일	안양시 공정무역협의회 회장 취임
	3월 31일	명학점, 안양점 통합
	8월 31일	바로미 도서관 폐관
	9월 23일~27일	베트남 사이공코업 네트워크 교류 참가
	11월 21일~24일	일본 생활클럽 가나가와 생협과 정기교류
2025년	6월 20일	바른두레생협 40주년 기념식
	10월 24일	공정무역 도지사상 수상
	9월 10일~14일	일본생협 코피아이치 연수 참가

제 40차 (법인 26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 40차 정기대의원총회
2. 소집연월일 : 2024년
3. 일 시 : 2025년 2월 22일(토) 오전 10시
4. 개 최 장 소 : 안양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5. 재적 대의원 : 100명
6. 참석 대의원 : 52명
7. 의 장 : 바른두레생협 이사장 이정우
8. 총 회 순 서
 - 제 1 부 : 기념식
 - 제 2 부 : 본회의
9. 1부 기념식
 - 가. 개식선언 : 10시에 10분에 사회자인 이상영 이사장 개식 선언을 하다.
한해 바른두레생협의 활동 동영상을 시청하다.
 - 나. 내빈소개 : 사회자가 안양Y 등대생협 이영숙 이사장, 새안양신협 하은숙 상무, 바른두레생협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등 내빈을 소개하다.
 - 다. 기 념 사 : 이정우 이사장이 기념사를 하다
 - 라. 축 사 : 안양Y 등대생협 이영숙 이사장이 축사를 하다
 - 마. 우수 조합원 및 직원 시상
 - 1) 우수생산자 시상 : 주식회사 맛들식품 이정희 대표 (대리수상 기획실장 이리황)
 - 2) 우수조합원 시상
안양점 김금순 / 영통점 홍성례 / 평촌점 유애현/ 천천점 이용복 / 동탄점 변혜자
인덕원점 성자영 / 매탄점 김성희
(대표시상: 천천점 이용복)
 - 바. 폐식선언 : 사회자가 1부 기념식 폐회를 선언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다.
10. 2부 본회의
 - 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한대건 상무이사의 사회로 본회의 시작 전 두레생협의 신물류센터 건축과정과 현재 완공된 모습의 동영상을 시청하다.
 - 한대건 상무이사가 100명중 52명의 대의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정우 이사장이 총회 개회선언을 하다.
 - 나. 의사록 서명 날인인 및 서기 선임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해 김정순 대의원, 김금난 대의원 신연홍 대의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추천하고 양연실 대리를 서기로 선임하다. 원안대로 통과되다.
 - 다.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신연홍 대의원이 제39차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의장이 대의원에게 질의여부를 묻고 질의가 없으므로 의장이 승인여부를 묻다
- 대의원 52명의 동의로 전차 회의록을 승인하다.

라. 의안 결정

- 이정우 의장이 의안 선정과 관련하여 대의원들에게 동의.제청을 요청하다
- 대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제청하여 원안을 통과하다.

마. 부의의안 심의

- 주영덕 대의원이 총회자료를 통해 안건을 미리 공지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1)호부터 (4)호의안까지 한꺼번에 제청하고 승인하는것을 제안하다.
- 이정우 의장이 주영덕 대의원 제안에 대하여 대의원의 의견을 묻자 대의원들이 동의하다.
- 한대건 상무이사가 1호의안을 먼저 보고하고, 2호의안부터 4호의안까지 한번에 요약 보고하는 것을 제청하자 의장이 승인하다.

(1) 제1호 의안: 2024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이정우 의장이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을 제안하다.
- 전준범 감사가 감사보고를 통해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적법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하다. 다만, 지적사항으로 출자좌수 감소로 인한 출자금 반환 시 정관이나 규약에 의거하여 즉시환급규정이 없으므로 환급 시 필히 이사회 결의 후 지급할 것을 지적하다.
- 임상욱 감사가 2024년 재무상태, 경영상태에 대해 걱정하였다고 종합회계감사보고를 하다.
- 이정우 의장이 감사보고에 관하여 대의원에게 질문이나 의견을 묻다.
- 이정우 의장이 대의원의 질문이나 의견이 없어 감사보고의 승인여부를 묻다.
- 대의원 52명의 동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2) 제2호 의안: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이정우 의장이 제2호 의안 2024 사업보고 및 결산(안)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제안하다.
- 한대건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2024년도 사업보고 및 조직활동, 결산과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요약하여 보고하다.
또한 앞으로의 사업방향과 생협조직활동방향 및 전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다
- 이정우 의장이 제2호 의안에 관하여 대의원에게 질의 여부를 묻다.
- 대의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정우 의장이 승인여부를 묻다.
- 대의원 52명의 동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3) 제3호 의안: 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이정우 의장이 제3호 의안 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제안하다.
- 한대건 상무이사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고 중장기적 사업방향과 핵심과제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과 실행계획을 설명하다.
- 이용복 조합원이 올해 40주년을 기점으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도 생협의 40년이라는 생명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장에 40주년을 알릴만한 홍보물을 설치하고, 현재 매장에 설치된 간판을 보수해줄 것을 제안하다.
- 한대건 상무이사가 40주년에 대한 홍보는 2024년부터 슬로건 공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홍보를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간판리모델링과 로고수정은 비용과 준비기간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은 어렵지만 40주년에 대한 홍보부분은 효과적으로 알릴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하다.



- 이정우 의장이 대의원들의 제3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승인여부를 묻다.
 - 대의원 52명의 동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 (4) 제4호 의안: 2025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 이정우 의장이 제4호 의안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제안하다.
 - 이정우 의장이 대의원들의 질문 및 의견을 묻다.
 - 이정우 의장이 대의원들의 승인여부를 묻다.
 - 대의원 52명의 동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 (5) 기타 안건
- 이정우 의장이 대의원에게 기타 안건 제안여부는 대의원 2/3 참석이 안되어 기타 안건 상정은 불가함을 말하고 기타의견의 여부를 물었으나, 기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 (6) 문의 및 제안사항
- 한대건 상무이사가 대의원 총회를 평일에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대의원의 의견을 물었으나 대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종전과 같이 토요일에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 (7) 임원진 및 임직원 소개
- 이정우 의장이 각 매장의 이사들을 소개하다.
 - 이정우 의장이 각 매장의 점장 및 직원을 소개하다.
- 바. 폐회 선언
- 의장이 보고내용에 따른 모든 의결사항을 다루었음을 확인한 후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40차(법인26차) 대의원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5.02.22.

의사록 서명날인

의장 및 이사장 이정우 (인)

의사록 확인자 신연홍 (인)

김금난 (인)

김정순 (인)

제1호 의안

2025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5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 제5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 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25년 감사보고서

2025년 매장사업/기획관리/조직홍보 부문 감사의견

1.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생협은 2025년 한 해 동안 한 차례의 대의원총회 및 일곱 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대의원 총회 및 각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 202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출자금 환급 절차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2025년 상반기 동안 환급 관련 규정을 다듬었고, 매 이사회에서 '탈퇴 및 출자좌수 감소 신청 및 환급의 건'을 고정 의안으로 상정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절히 시정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3.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매출 증진, 매장별 맞춤 리뉴얼을 통한 매장이용 만족도 제고, 내부 교육 및 워크숍 진행을 통한 결속력 강화 등 적절한 운영을 하였고, 그 결과 각 부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끝.

재정 및 회계 부문에 대한 감사의견

- 1) 바른두레생협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 2) 바른두레생협의 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기타 회계장부와 증빙 서류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02월 05일

감사 전준범



감사 임상옥



제2호 의안

2025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 처리(안)에 대해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 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202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25년 매장사업부문 결산 및 평가

▣ 2025년도 사업목표

강화

1. 핵심과제

- 매장환경개선
- 사회적경제연대사업 강화
- 오리지널생활재 집중개발
- 온라인(무점포) 이용 확대 (매장 미이용 조합원 중심)
- 지원사업을 활용한 사업 기획 확대

2. 핵심과제별 주요사업

1) 매장환경개선

- 업무표준화 및 간소화
- 매장 근로자의 조합원 관리 강화
- 매장 근로자의 전문성 강화 (정기교육실시)
- 주별사업기획서를 이용한 매장 기획 통일화
- 각 매장별 조합원 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 매장 내외부 노후화 설비 개선

2) 사회적경제 연대사업 강화

- '사회적경제 연대매장' 이미지 구축
- 차별화된 이벤트 기획으로 매장 활성화
- 사회적경제 연대 특성화 사업 개발

3) 오리지널 생활재 집중 개발

- 바른두레생협 대표 오리지널 생활재 개발
- 사회적기업 제품 등의 독자생활재 개발
- 지역기반 로컬 생활재 판매 확대
- 신선식품 (농축산, 수산) 판매 전략 수립

4) 온라인 이용 확대 전략

- 조합원 관리체계 수립 (충성조합원, 정기이용조합원, 장기 미이용조합원)
- 매장 장기 미이용조합원중심 온라인(무점포) 이용 확대
- 온라인(무점포) 이용을 위한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실행

5) 부실매장 관리

- 장기 적자누적매장에 대한 관리 전략 수립 및 실행
- 매장별 환경분석 및 핵심과제 도출
- 부실매장의 손익구조 개선전략 실행

6) 조합원 관리 체계화

- 조합원 관리 체계 수립
- 충성조합원과 정기이용조합원에 대한 차별화 전략 수립
- 충성조합원과 정기이용조합원 확대
- 매출기반 확보 및 조합원 활동 활성화
- 신규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활동 지속화 정책 마련

1. 매출 목표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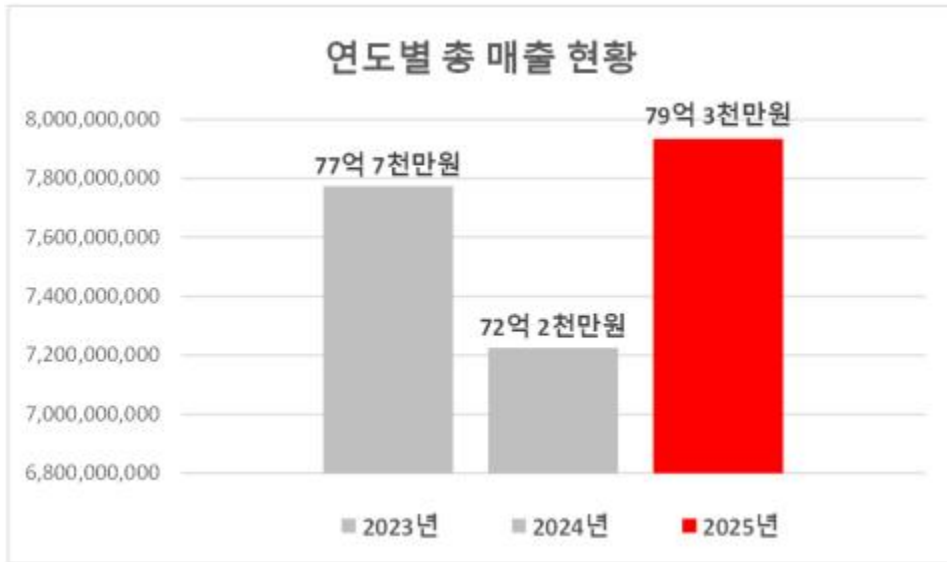
1) 목표

- 2025년 매출 목표 : 年 76억 2천만원
- 2025년 매출 결과 : 79억3천만원(전년대비 109.82% 달성)
- 2025년 마진율 목표 : 25.5%
- 2025년 마진율 결과 : 26.42% 달성!

2) 결과

- 총매출 결과

	2023년 매출	2024년 매출	2025년 매출	전년도대비 성장율
매출	7,772,993,664	7,224,330,040	7,934,053,403	109.82%



- 매장별 매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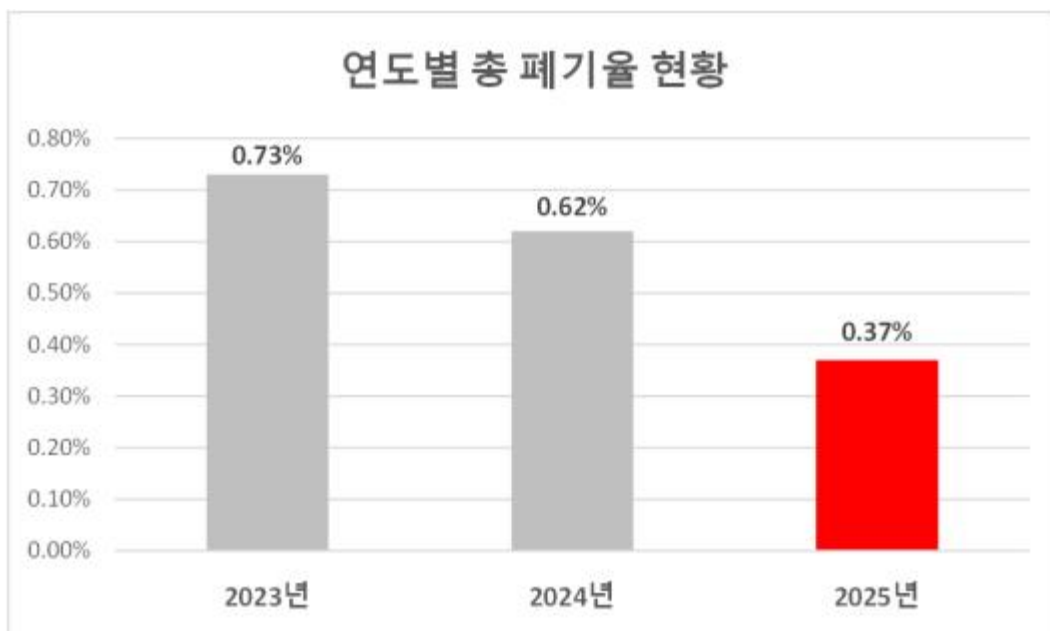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매장	2024년 매출액	2025년 목표액	2025년 매출액	전년 대비증가(%)
안양	854,560,652	940,000,000	1,022,453,709	119.64%
영통	1,153,195,096	1,190,000,000	1,259,779,173	109.24%
평촌	1,119,282,676	1,170,000,000	1,259,174,748	112.49%
천천	930,472,326	980,000,000	1,085,942,400	116.70%
동탄	563,706,324	680,000,000	649,585,905	115.23%
인덕원	905,285,076	950,000,000	1,023,372,364	113.04%
매탄	640,624,106	710,000,000	684,379,925	106.83%
무점포	957,340,763	1000,000,000	949,365,179	99.16%
명학	99,863,021			
합계	7,224,330,040	7,620,000,000	7,934,053,403	109.82%

3) 2025년 매장 폐기율 및 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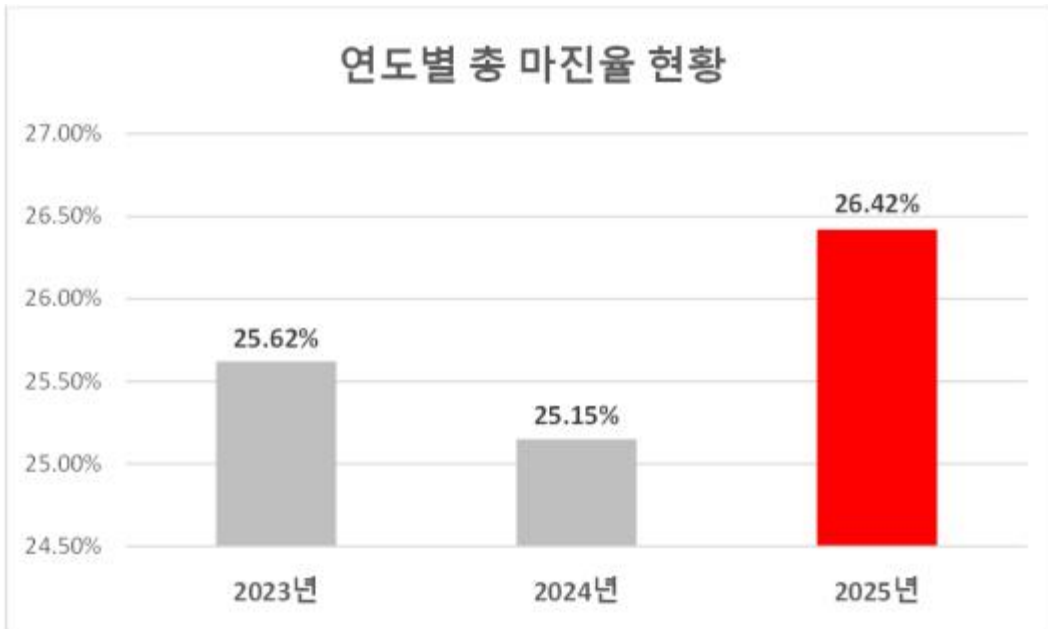
- 매장 폐기 현황(2021년~2025년)

년도	매출액	폐기 금액	폐기율
2021년	8,541,654,153	54,109,243	0.63%
2022년	7,795,659,602	47,778,711	0.61%
2023년	7,772,993,664	57,036,751	0.73%
2024년	7,224,330,040	44,813,051	0.62%
2025년	7,934,053,403	29,366,644	0.37%



-매장 마진율 현황(2022년~2025년)

년도	매출액	매출원가	마진율
2022년	7,795,659,602	6,015,255,280	22.83%
2023년	7,772,993,664	5,781,430,295	25.62%
2024년	7,224,330,040	5,407,117,652	25.15%
2025년	7,934,053,403	5,837,440,682	26.42%



4) 2025년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매출현황

- 매출 현황(2021년~2025년)

년도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개수	매출 금액	매출비율
2021년	77개소	464,563,946	5.43%
2022년	80개소	511,189,735	6.55%
2023년	80개소	598,300,490	7.69%
2024년	80개소	616,096,978	8.52%
2025년	81개소	600,708,569	7.57%

5) 전년도대비 매장 방문객수 및 객단가

구분	2024년		2025년	
	객수	객단가	객수	객단가
안양점	25,601	34,014	36,226	28,671
영통점	36,842	31,268	43,025	29,250
평촌점	35,646	32,214	43,293	29,913
천천점	34,420	27,876	41,393	27,105
동탄점	17,261	33,548	32,892	20,312
인덕원점	31,890	29,209	36,465	28,933
매탄점	23,084	28,503	26,040	26,992
평균	29,249	30,947	37,047	27,310

6) 사회적기업 매출

년도	사회적기업 입점 수	매출 금액
2022년	57개	437,481,481
2024년	73개	417,006,374
2025년	76개	423,802,064

2. 전년도 대비 조합원 가입, 탈퇴 및 이용조합원

- 2025년도 조합원 수 : 18,182명
- 이용조합원 85.26%달성! 작년대비 1.68% 상승!

구분	가입		탈퇴		순증가		전체조합원		이용조합원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무점포	166	177	85	114	81	63	4,123	4,204	1,902	2,003
안양점	85	93	67	72	18	21	2,255	2,295	2,067	2,265
영통점	68	63	86	78	-18	-15	2,648	2,645	2,274	2,274
평촌점	84	89	75	72	9	17	2,266	2,284	2,264	2,272
천천점	91	114	78	85	13	29	1,911	1,963	1,906	1,947
동탄점	41	59	86	52	-45	7	2,039	2,055	2,036	2,047
인덕원	61	86	58	55	3	31	1,415	1,435	1,410	1,442
매탄점	63	64	77	64	-14	0	1,425	1,439	1,255	1,266
합계	659	745	612	592	47	153	18,082	18,182	15,114	15,516

3. 개별나눔(무점포)

- 조합원 수 : 2,003명
- 매출결과 : 1,081,594,985 원

항목	23년 결과	25년 결과	전년대비(%)
매출	1,097,138,024	1,081,594,985	98.58%
이용조합원수	1,882	2,003	106.43%
1인당 이용금액	582,963	539,987	92.62%
총 주문 수	13,982	13,388	95.75%
1인당 연간 주문 횟수	7.4회	6.7회	-

4. 매장별배송매출 (단위 : 천원)

	배송 건수			배송 매출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안양	2,621	2,701	103.05%	228,077	242,977	106.53%
영통	2,008	2,182	108.66%	173,407	188,895	108.93%
평촌	2,629	2,790	106.12%	269,758	309,309	114.66%
천천	1,544	1,754	113.60%	127,163	159,720	125.60%
동탄	1,592	1,810	113.69%	170,881	207,780	121.59%
인덕원	1,771	2,000	112.93%	160,476	176,558	110.02%
매탄	1,423	1,619	113.77%	109,098	113,490	104.02%
합계	1,941	2,122	109.33%	176,980	199,818	112.90%

5. 2025년 월간 기획 및 생활재 기획

월별	2025년 월별 매장 행사 및 집중 생활재
1월	설명절행사 / 차례상 제수용품, 설선물세트 기획, 겨울방학 간편식, 건강식품
2월	대보름행사 / 고로쇠기획, 정월대보름나물, 메주
3월	신학기기획행사 / 환절기대비 건강식품, 봄나물, 햇과일
4월	영통점,인덕원점주년행사, 신규조합원확대행사 / 햇산양삼, 햇과일
5월	바른두레생협 창립행사, 책임조합원행사 / 햇산양삼, 토마토, 사과부사, 열무김치
6월	평촌점, 동탄점주년행사 / 청매실, 황매실, 블루베리, 하지감자, 햇마늘, 여름김장김치
7월	천천점주년행사 / 초복, 중복기획(전복/토종닭/장어), 복숭아, 블루베리, 메론, 수박, 천일염, 햇마늘
8월	말복기획 / 전복, 민물장어, 토종닭, 여름과일
9월	매탄점주년행사, 추석행사 / 햇수삼, 생오미자, 햇고춧가루, 왕새우
10월	감사행사 / 절임배추, 젓갈류, 천일염, 가을이불대전
11월	신규조합원확대행사 / 햇건구기자, 담근김치, 절임배추, 안심전기요
12월	연합감사행사, 바른연말행사, 책임조합원행사 / 크리스마스 케익, 와인

▣ 2025년 BEST 생활재

조합원님이 가장 많이 이용하신 생활재는?		가장 많이 이용하신 독자 생활재는?	
순위	생활재명	순위	생활재명
1위	우리콩부침용두부(420g)	1위	단)좋은불고기
2위	산안유정란(15알)	2위	사)이음찰떡
3위	콩나물(무농약/300g)	3위	단)강원도강냉이
4위	원삼유정란(15알)	4위	단)우리밀마카로니
5위	우리콩찌개용두부(420g)	5위	사)뼈없는갈비탕
6위	어린이주스(날개)	6위	사)정통나주곰탕
7위	대파(300g/무농약)	7위	단)흑돼지수육
8위	작은키콩나물(무농약/300g)	8위	사)쌀우유식빵
9위	우리콩연두부(100g)	9위	사)고기사골곰탕
10위	깻잎(20장/무농약)	10위	단)이호상토마토500g

▣ 총평가

2025년 조합원 이용고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한 해로 평가됩니다.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님들의 꾸준한 이용과 매장 운영의 안정화 노력이 점진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확대 시행된 물가안정 지원사업(경기도 소비쿠폰, 농축산·수산 할인쿠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합원 매장 방문을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이용 빈도와 매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매장별 맞춤 리뉴얼 (기획매대 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 매장환경 리뉴얼등)으로 더욱 더 매장 분위기를 환기하여, 조합원들의 높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및 여러 생산자님들의 매장 방문 행사와 홍보·판매 촉진 활동, 조합원 참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매장 운영에 활력을 더하고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5년은 향후 안정적인 성장과 매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한 해로 평가됩니다.

2025년 조직홍보부문 활동결산 및 평가

1. 위원회 활동

■ 생활재 위원회

1) 생활재 선정회의 및 신규생활재 검토

- 일 자 : 매월 첫째주 수요일
- 장 소 : 매탄점 조합원 공간
- 내 용 : 생활재가 공급되기 전, 두레생협 조합원을 대표하여 생활재 샘플 검토 후 안전하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재인지 확인.
신규생활재의 개선, 개발사항과 취급여부를 논의함.

차 수	일 시	참 석	회 의 결 과
1차	1/9 (목)	13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개 유형 11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10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귀리YOU, 초코현미크런치바, 초코현미퐁, 오케이놀라 카카오, 카뮤트호소, 고구마맛탕, 제주 순진한 레몬차, 주방가위, 휴대용 가스렌지(미니), 전기밥솥블랑 · 개선 후 재검토(1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굿모닝 마즙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생딸기잼 유기농 딸기 원물 사양 변경 · 상황버섯차 제조공정 및 생산지 마고 소개 · 유기농 귀리YOU 용량 변경 및 운영 계획 · 공정무역 및 협동조합 무역생활재 운영 방향
2차	2/13 (목)	14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9개 유형 15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12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곡초코팝, 여성초 약산성 클렌징폼, 마스크팩(콜라겐,알로에,발효쌀), 콜라겐 탄력스킨·탄력로션, 제로너스 페이스&바디, 기능성 반팔 티셔츠, 천연수세비, 부대찌개 밀키트, 봄채소무침 · 공통생활재 미취급有(2품목)

차 수	일 시	참 석	회 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치즈볼, 육개장 · 개선 후 재검토(1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굿모닝 마즙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귀리YOU 출시 계획(안) · 공정무역 와인 가격인하 및 기획 공급 물량 취합 · 호주산 유기 양고기 수입 검토의 건
3차	3/13 (목)	14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개 유형 12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1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뼈없는 감자탕, 양파송송, 화이트닝 비타크림, 굿모닝 마즙, 달래장, 우리밀초코머핀(20개), 우리밀초코브라우니(20개), 우리밀촉촉 초코케익(20개), 초코버터마들렌(20개), 우리밀와플(20개), 우리밀 꽃빵(30개) · 개선 후 재검토(1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깨미역국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념더덕 및 팔죽 사양 변경 · 양파송송 사양 변경 보고 · 유기농 귀리YOU 네이밍 및 패키지 디자인 선호도 조사
4차	4/10 (목)	12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개 유형 16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16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메밀면세트, 6년근 홍삼캔디, 허브헤어 칼라 염색약(열은갈색, 진한갈색, 자연흑색), 풀빛고운 토너·로션·에센스·아이크림·수분크림·영양크림·썬블러로션, 들깨미역국, 닭가슴살 샐러드, 호두파이, 순진한 딸기콩포트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파송송 사양 변경 · 게맛살 및 소고기 된장찌개 사양 변경 · 급식용 생활재 기획 보고 · 2025년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진행 보고

차 수	일 시	참 석	회 의 결 과
5차	5/8 (목)	13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4개 유형 29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24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밀감자죽, 24밀크티, 유기농알로에베라겔100, 미디안ABC주스, 방울토마토마리네이드, 산다화 유기농레몬썸크림, 리유저블컵(3색상), 사탕수수·리사이클 옷걸이, 리빙박스, 슈가랩주걱, 슈가랩글라스 밀폐용기, 텐셀 모달 머드팬티, 모달 끈조절 캡 내장 나시, 동물복지 통살수제등심돈가스·고추장불고기·간장불고기, 배추겉절이, 참나물두부무침, 취나물된장무침, 참나물생무침, 무생채, 건파래무침, 명인 알찬양념게장, 명인알찬간장게장 · 공통생활재 미취급有(2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짹어먹는 초코스틱, 스프레드초코 · 불가(3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양갱, 딸기양갱, 다용도행주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반찬 기획 및 향후 계획 · 뼈없는 양념닭발 매운맛 개선 보고 · 허브 염색약 출시 기획 · 협동조합 수입 품목 진행 현황 보고 · 2025년 협동조합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안) · 유기농 귀리YOU 진행 현황 보고
6차	6/12 (목)	10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개 유형 9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9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수제비, 유기농딸기쉐이크, 발아 유기농 보리차·옥수수차, 유기농 푸룬(스틱), 모과배도라지주스, 허브컨디셔너, 무쇠용품 2종(미니웍, 미니팬)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Coop 커피 공장 철수에 따른 위탁생산 공급 보고 · 유기농 귀리YOU 사전 예약 진척상황 보고
7차	7/10 (목)	13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개 유형 7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6품목)

차 수	일 시	참 석	회 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치즈주먹밥, 알육수멸치, 혈당혈압혈행케어, 그레인남성올인원, 한우사태스지수육 · 공통생활재 미취급유(1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로감자칩 · 불가(1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불고기주먹밥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컨디셔너 종량 및 가격 변경 · 양갱, 젤리류 한천 원산국 변경 ·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제품경쟁력 지원사업 계획 · 2025년 사회적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 결과보고 · 생메밀면 품질저하 시즌 조기 종료 · 국산 현미유 생산 잠정 중단 및 향후 계획 · 유리병 생활재 관련 의견 수렴
8차	8/14 (목)	8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개 유형 9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9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밀소금빵, 유기농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스틱), 동그랑땡, 토마토미트파스타소스, 까르보나라파스타소스, 열무얼갈이물김치, 안동반마리찜닭밀키트, 데리야끼닭꼬치, 현미유(1L), 유기농해바라기유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신선반찬 사업 계획 보고 · 협동조합 유지류2종 수입 진행현황 보고 · 2025년 추석 기획 선물세트 사전 보고 · 유리병 생활재 관련 2차 의견 수렴
9차	9/11 (목)	15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개 유형 28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25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진국돼지국밥, 유기농제주말차, 침향단, 관절연골케어영양제, 분말야채육수, 스마트전기주전자 - 두레맛찬(통오징어숙회, 짜글이찌개, 코다리조림, 김치찜, 연근유자피클, 오미자무생채, 파김치, 지리멸치볶음, 죽순볶음, 우엉조

차 수	일 시	참 석	회 의 결 과
			<p>림, 깃잎순들깨볶음, 오이뱃두리, 발효청매실고추장무침, 도라지 초무침, 오미자미역초무침, 부지깻이나물, 곤드레나물, 도라지나물, 취나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 미취급有(3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딸기/초코 카스테라인절미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신선반찬 두레맛찬 계획 및 현황 보고 · 새롭식품 짬뽕라면(봉지,컵) 공급 중단 · 하반기 주요 무역 생활재 수입 일정 및 올리브유 공급 현황
10차	비대면 (검토 의견서 대체)	16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개 유형 4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1품목) : 단팔죽 · 공통생활재 미취급有(3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설령탕, 한우도가니스지탕, 혼연멸치만능간장
11차	11/13 (목)	14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개 유형 16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16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밀베이글칩스 갈리/플레인, 소고기미역국, 우렁되장찌개, 단팔 미니짬뽕, 말랑가래떡과쌀조청, 콩고물찹쌀떡 - 크리스마스케이크(우리밀 생크림/고구마/가나슈/치즈) - 두레맛찬(갯물김치, 산채나물비빔세트, 멸치김치찜, 자연산 간장 새우장/양념새우장)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11월 신선반찬 두레맛찬 현황 및 계획 보고 · 생생딸기잼, 토리젤리, 심쿵엑상조미료 사양 변경 · 섬유탈취제, 버블핸드워시 사양변경 · 2026년 쿠피탈리아 수입 예정 생활재 계획 보고 · 선정위원 대상 막장 만들기 체험
12차	12/11 (목)	12 회원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9개 유형 16품목 제안 ○ 선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생활재(13품목)

차 수	일 시	참 석	회 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용대보액, 이문샷종합비타민, 고추씨기름, 유기농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250ml) - 두레맛찬(생갯잎무침, 파리고추멸치조림, 감자채볶음, 시금치나물, 비빔한우고추장) - 쿠피탈리아(유기농통밀팬네파스타, 토마토퓨레, 바질페스토, 홀그레인머스타드) · 공통생활재 미취급有(4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밀쫄드기, 통밀/통밀시드감빠뉴, 유기농매실톡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신선반찬 두레맛찬 결과 및 12월 계획 보고 · 협동조합(쿠피탈리아) 무역생활재 4종 수입의 건 · 쌀조청 사양 변경 · 생활재선정위원 대상 생활재 설문조사 결과



2. 조직 내부 활동 및 조합원 행사

■ 책임조합원 혜택

- 1) 생일 책임조합원 미역증정
 - 방 법 : 매월 1일에 당월 생일인 책임조합원께 안내문자 발송
 - 내 용 : 당월 생일 맞은 책임조합원께 미역 증정

- 2) 책임조합원 명절 떡국떡 증정행사
 - 일 자 : 1월 20일(월) ~ 1월 24일(금) 증정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바른두레생협 책임조합원님의 특별혜택으로 책임조합원 유지와 가입유도를 위한 행사

- 3) 책임조합원 감사행사
 - 일 자 : 2025년 12월 29일(월)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책임조합원 특별혜택-생활재 전품목 20% 할인행사
- 일반조합원님 대상으로 “송년 조합원 감사행사” 동시 진행

■ 제40차 정기 대의원 총회

- 1) 제40차(법인 제26차) 정기 대의원 총회 온라인 사전모임
 - 일 자 : 2월 11일(화) 오후 8시
 - 방 법 : 온라인(ZOOM) 회의
 - 내 용 : 2월 6일, 2월 11일 대의원께 온라인 사전모임 안내문자 발송.
ZOOM 회의 참석 대의원께 사전보고 진행함.

- 2) 제40차(법인 제 26차) 정기 대의원 총회
 - 일 자 : 2월 22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 총회안건 : I. 제 1호 의안 2024년 종합 감사보고 승인의 건
II. 제 2호 의안 2024년 활동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 처리(안) 승인의 건
III. 제 3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IV. 제 4호 의안 2025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 조합원 혜택 및 나눔행사

1) 봄맞이 칼같이 행사

- 일 자 : 4월 17일(인덕원점) / 4월 24일(안양점)
5월 8일(동탄점) / 15일(천천점) / 21일(영통점) / 22일(평촌점) / 29일(매탄점)
- 내 용 : 매장 이용 조합원께 칼같이 무료행사

2) 정리정돈 무료강좌

- 일 자 : 2025년 9월 2일(화)
- 방 법 : ZOOM 온라인 강좌
- 내 용 : ZOOM 온라인 강의 + 2주간 함께 챌린지 진행

3) 산타나눔행사

- 일 자 : 2025년 12월 23일(화)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조합원께 각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산타주머니에 생활재 기부를 받은후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에게 전달.

4) 이달의 바른지킴이 증정행사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월 생활재 이용 우수 조합원님께 선물 증정

- 3월 13일(1,2월합 매출해당) - 주방세제 증정
- 4월10일-마스코바도 증정 / 5월8일-우리밀과자 2종 증정
- 6월12일-프락토 올리고당 증정 / 7월10일-유기농 보리차 간편티백 증정
- 8월14일-공정무역 스파게티 듀럼밀 or 통밀 증정 / 9월11일- 알육수 멸치(20알) 증정
- 10월30일-강화합쌀백미(1kg소분) 증정 / 11월20일- 마스코바도 생강젤리 증정



■ 생산지 견학

- 1) 장수이야기 방문 및 점장회의
 - 일 자 : 2025년 3월 5일(금)
 - 장 소 : 장수이야기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15번길 186-46)
 - 내 용 : 생산지 견학, 생산자와의 대화 및 점장회의 진행

- 2) 신물류센터 방문 및 이사회
 - 일 자 : 2025년 3월 26일(수)
 - 장 소 : 두레생협 화성물류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476-42)
 - 내 용 : 신물류센터 견학 및 이사회 진행

- 3) 2025 매장별 조합원활동 '생산지 소풍'
 - 일 자 : 2025년 4월 11일(금)
 - 장 소 : 산안마을 (경기도 화성시)

- 대 상 : 매탄점 조합원 및 매장 근무자
- 내 용 : 2025년 매장별 조합원활동의 일환으로 매장 조합원과 매장 근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생산지 방문 행사 (생산자와의 간담회 및 생산지 견학)

4) 신물류센터방문 및 점장회의

- 일 자 : 2025년 4월 29일(화)
- 장 소 : 두레생협 화성물류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476-42)
- 내 용 : 신물류센터 견학 및 점장회의 진행



■ 워크숍

1) 바른두레생협 사무국, 점장 워크숍 및 점장회의

- 일 자 : 2025년 6월 27일(금)
- 장 소 : 양평 팬션(경기도 양평군 교골길27번길 56-22)
- 내 용 : 사무국 직원과 점장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및 점장회의

2) 점장 및 사업팀 워크숍

- 일 자 : 2025년 10월 17일(금) ~ 10월 18일(토)
- 참 석 : 상무, 매장사업팀장 및 점장 등 9인
- 내 용 : 10월 17일 - 초산정(식초생산업체) 방문 및 견학
- 에코생협 합동 생산자 교육

- 매장사업 전략기획회의
- 10월 18일 - 무릉도원(병조림 생산지) 방문 및 견학

3) 실무자 워크숍

- 일 자 : 2025년 12월 12일(금) ~ 12월 13일(토)
- 장 소 : 선재도 펜션
- 내 용 : 워크숍을 통해 사무국과 매장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전략적인 경영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생협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회의를 함.
- 참석인원 : 13명



■ 바른두레생협 40주년기념

1) 40주년기념 조합원 에피소드 공모전

- 공모기간 : 2025년 3월 27일 ~ 4월 30일
- 내 용 : “바른생협을 이용하며 있었던 재미있고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밴드 및 홈페이지에 게시
- 상 품 : 1등(1명) - 생활재 구매 가능 포인트 5만원
2등(1명) - 생활재 구매 가능 포인트 3만원
3등(3명) - 생활재 구매 가능 포인트 1만원
- 참여방법 : 구글설문지 & E-mail 접수

2) 40주년기념 대한민국 1호 생협생활재 만남의 날

- 일 자 : 2025년 5월 16일(금)
- 장 소 : 산안마을 (경기도 화성시)
- 대 상 : 신청 조합원 및 활동가
- 참가비 : 무료
- 내 용 : 바른두레생협 4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1호 생협생활재 만남의 날 진행 (생산자와의 간담회 및 생산지 견학 & 단풍나무 심기 및 메시지 묶기)

- 기 타 : 45인승 관광버스로 이동 / 여행자보험 가입 / 점심 도시락 제공

3) 바른두레생협 40주년기념행사

- 일 자 : 2025년 6월 20일(금) 오후 4시
- 장 소 : 안양중앙성당 소극장
- 내 용 : 40주년 맞이하여 여러 가지 공연 및 행사 진행

4) 흥성유기농 당근농장 일손돕기 (40주년 기념사업)

- 일 자 : 2025년 11월 11일(화)
- 장 소 : 흥성 유기농
- 내 용 : 조합원들과 함께 흥성 유기농 양파농장(올해 당근 생육이 좋지 않아 수확이 어려워짐에 따라, 양파 작업으로 일손돕기 내용을 조정해 진행함)을 방문해 수확과 정비 작업을 도움.
40주년을 기념하며 지역 생산자와의 연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음.



■ 매장별 행사 내용

1) 매장별 주년행사

- 일 자 : - 안양점 : 2025년 2월 19일(수)
- 동탄점 : 2025년 4월 23일(수)
- 영통점 : 2025년 5월 21일(수)
- 평촌점 : 2025년 6월 25일(수)
- 천천점 : 2025년 8월 27일(수)

- 인덕원점 : 2025년 10월 22일(수)
 - 매탄점 : 2025년 11월 26일 (수)
 - 내 용 : 행사당일 매장 이용 조합원 특별할인행사 및 사은품 증정
- 2) 바른두레생협 창립주년행사 (40주년)
- 일 자 : 2025년 5월 22일(목)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행사당일 매장 이용 조합원 특별할인행사 및 사은품 증정
- 3) 두레생협연합 주년행사 (28주년_권역별 행사)
- 일 자 : 2025년 6월 16일(월) ~ 6월 17일(화)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2025년 상반기 권역별 전품목 할인행사 진행
- 4) 조복, 중복, 말복행사
- 일 자 : 초복-7월 17일(수) / 중복-7월 31일(목) / 말복-8월 7일(목)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복날 시즌을 맞아 건강식 중심의 행사 기획
초복~말복 기간 동안 보양식 생활재 판매
- 5) 사경데이
- 일 자 : 2025년 8월 14일(목)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제품 설명, 판촉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촉진
- 6) 생명나눔한마당 조합원 감사행사
- 일 자 : 2025년 10월 30일(목)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생명나눔한마당 기념 일부생활재 할인 행사
- 7) 천천점 리뉴얼 행사
- 일 자 : 2025년 11월 19일 (수)
 - 내 용 : 행사당일 매장 이용 조합원 특별할인행사 및 사은품 증정
- 8) 하반기 전품목 권역별 할인행사

- 일 자 : 2025년 12월 17일(수) ~ 12월 18일(목)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2025년 연말을 맞아 진행하는 권역별 조합원 감사행사
※ 온라인은 12월 8일(월)부터 12/19(금)까지 2주간 진행

9) 송년 조합원 감사행사

- 일 자 : 2025년 12월 29일(월)
- 장 소 : 전 매장
- 내 용 : 행사당일 매장 이용 조합원 특별할인행사 및 사은품 증정
- “책임조합원 감사행사” 동시 진행

■ 내부활동

1) 전반기 감사

- 일 자 : 2025년 8월 14일(목)
- 장 소 : 바른두레생협 사무국
- 내 용 : 바른두레생협 전반기 경영 전반 및 회계 감사

2) 초급실무자 교육

- 일 자 : 2월 26일(수) / 3월 28일(수) / 12월 3일(금) (4시간 소요)
- 장 소 : 바른두레생협 사무국
- 내 용 : 1부 - 생협조직 및 기본교육
2부 - ERP 활용 및 실무교육
3부 - 인사 및 총무회계교육

3) 2025 바른두레송년회

- 일 자 : 2025년 12월 19일(금) 19:00
- 장 소 : 봉암식당
- 내 용 : 2025년 한해 고생하신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2026년 새해 다짐과 함께
전 직원의 단합을 도모 (즐거운 프로그램 진행, 맛있는 음식, 푸짐한 선물시상)



3. 외부회의 및 활동

■ 총회·회의

- 1) 두레플러스 총회 / DLS 총회
 - 일 자 : 2025년 3월 18일(화)
 - 장 소 : 두레생협연합 신물류센터 (경기도 화성시)
 - 참 석 : 한대건 상무이사

- 2) 연합회 총회
 - 일 자 : 2025년 3월 21일(금)
 - 장 소 :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무실
 - 참 석 : 바른두레생협 소속 대의원 6명

■ 교육·워크숍

- 1) 2025년 두레생협 신입임원교육
 - 일 자 : 2025년 4월 1(화), 3(목), 8(화), 10(목) 10시~16시
 - 내 용 : 온라인강의 및 은평구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 교육참가자 : 주선미 이사, 박선희 이사

- 2) 2025 두레생협 실무책임자 교육
 - 일 자 : 4월 23일(수) / 5월 9일(금) / 6월 13일(금)

- 장 소 : 두레생협연합회 회의실
- 대 상 : 실무책임자
- 내 용 : 두레생협 리더로서 필요한 역량 개발과 강화를 위한 교육

3) 바른-안양Y 이사회 통합 워크숍

- 일 자 : 2025년 5월 23일(금)
- 장 소 : 과천 소망교회 야외카페
- 내 용 : 바른두레, 안양Y 임원진 상견례, 정책 토론 등

4) 2025 두레생협 임원교육

- 일 자 : 2025년 9월 9일(화) · 16일(화) 10:30~16:30 (총 2회차)
- 장 소 : 두레생협연합회 메인홀
- 참 석 : 신연홍 전 부이사장
- 내 용 : ‘모두가 말하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책임지는 회의문화’ 만들기

5) 실무책임자 워크숍

- 일 자 : 2025년 12월 4일(목) ~12월 5일(금)
- 장 소 : 곤지암리조트
- 참 석 : 한대건 상무
- 내 용 :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참고사항 보고 / 2025년 우수사례발표



■ 축제·기념행사

1) 두레물류센터 준공식

- 일 자 : 2025년 2월 28일(금)
- 장 소 : 두레생협 신물류센터
- 내 용 : 두레생협 신물류센터 준공을 맞아 내외빈 및 조합원, 두레생협연합회와 회원생협의 임직원이 모여 준공식을 개최.

2) 두레이음 통통통 한마당

- 일 자 : 2025년 7월 11일(금)
- 장 소 : 구례 지리산리조트
- 내 용 :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및 간담회, 회원생협 소개, 뒷풀이 한마당 등

3) 흥성유기농 창립 20주년 기념식

- 일 자 : 2025년 8월 22일(금)
- 장 소 : 예원가든 (충남 홍성군)
- 내 용 : 흥성유기농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축하금을 전달

4) “2025 두레생협 생명나눔한마당 in 의성“ 행사 참가

- 일 자 : 2025년 10월 18일(토) 12시~17시
-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산운생태공원(경북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19)
이상문 생산자 사과밭(일부 참가)
- 행사취지 : - 생산자와 소비자의 스킨십과 연대의식을 높여 신뢰 구축 및 생명가치 공유
- 두레생협의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임
- 여유와 쉼이 있는 행사로 마련

5) 춘천두레생협 창립 30주년 기념식

- 일 자 : 2025년 10월 3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 참 석 : 이정우 이사장, 한대건 상무
- 내 용 : 춘천두레생협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 컨퍼런스·교류

1) 코프아이치 간담회

- 일 자 : 2025년 11월 6일(목)
- 장 소 : 구로아트센터
- 내 용 : 일본생협 코프아이치의 통합 사례에 대한 강연
- 참 석 : 한대건 상무

2) 2025 체인지온 컨퍼런스 (“탁월“)

- 일 자 : 2025년 11월 27일(목)
- 장 소 : 서울 엘타워
- 참 석 : 한대건 상무, 구연숙 조직홍보
- 내 용 : '세상을 바꾸는 탁월함·인문학과 과학 속의 탁월함·지원의 탁월함' 등 컨퍼런스의 핵심 내용을 공유



4. 지역연대활동

■ 기후위기

1) 927 기후정의행진

- 일 자 : 2025년 9월 27일(토)

- 장 소 : 광화문 동십자각
- 내 용 :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 모임 행진

■ 공정무역

1) 안양시 공정무역협의회 정기총회

- 일 자 : 2025년 4월 1일(화)
- 장 소 : 안민교회 1층
- 참 석 : 이정우 이사장, 한대건 상무

2) 안양시 공정무역위원회 회의

- 일 자 : 2025년 4월 2일(수)
- 장 소 : 안양시청 본관 베이비부머센터 교육장
- 참 석 : 한대건 상무 (안양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위촉)

3) 안양시지속가능발전 한마당

- 일 자 : 2025년 6월 6일(금) 오후1시~5시
- 장 소 : 평촌중앙공원
- 내 용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퀴즈 부스 운영하며 공정무역과 지속가능성 가치의 중요성을 알림

4) 부천공정무역 개막식

- 일 자 : 2025년 10월 24일(금)
- 장 소 :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
- 내 용 : 공공정무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바른두레생협 이정우 이사장이 도지사상 표창을 수상함

5) 안양공정무역 포트나잇

- 일 자 :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안양시청
- 내 용 : 안양시의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기념하여 현판식과 강의, 시청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무역 나눔행사 진행
- 참 석 : 이정우 이사장, 한대건 상무



■ 사회적경제기업

1) 안양시 사회적기업협의회 간담회 및 협약식

- 일 자 : 2025년 8월 22일(금)
- 장 소 : 캐어랜드(안양시 농수산물센터 관리동)
- 내 용 : 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국회의원이 참석한 간담회 및 협약식 개최

2) 2025 안양 춤 축제 나눔장터 참가

- 일 자 : 2025년 9월 27일(토) · 28일(일)
- 장 소 : 평촌중앙공원
- 내 용 :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홍보 목적의 부스 운영

3) "협동이데이" 참가

- 일 자 : 2025년 10월 18일(토)
- 장 소 : 안양중앙성당
- 내 용 :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들이 함께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기념 행사
- 참 석 : 이정우 이사장 참석

4) 전국사회연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창립기념식

- 일 자 : 2025년 10월 24일(토) / 오전 11시
- 장 소 : 평촌 마벨리에
- 참 석 : 한대건 상무
- 내 용 : 창립을 기념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의 뜻을 다짐

5) 경기도 사회적경제 '협동' X '판로; 성과공유회

- 일 자 : 2025년 12월 3일(수)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 참 석 : 매장사업팀 (임정희 팀장, 이정혁 주임)
- 내 용 : 2025년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과 [판로마케팅 지원사업]의 성과 공유

■ 일본 생협 연수·견학

- 1) 일본 코프아이치 생협 연수
 - 일 자 : 2025년 9월 10일(수) ~ 9월 14일(일)
 - 장 소 : 코프아이치 생협
 - 내 용 : 일본 코프아이치 생협의 운영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연수로, 조직 운영과 지역 연계 사례를 견학·교류함.
 - 참 석 : 임정희 팀장

- 2) 일본 가나가와생활클럽 생협 방문
 - 일 자 : 2025년 11월 20일(목) ~ 11월 22일(일)
 - 장 소 : 가나가와생활클럽 생협
 - 내 용 : 일본 가나가와생활클럽 생협이 주최하는 ‘히로시마 부흥 축제’에 참석하고 가나가와 생활클럽의 현지 견학을 통해 일본생협의 사례를 학습
 - 참 석 : 한대건 상무

5. 총 평 가

■ 평가

2025년 조직홍보부는 위원회 활동, 조합원 혜택 및 감사 행사, 내부 교육과 워크숍, 외부 및 지역 연대 활동을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생활재 위원회 운영을 통해 생활재 검토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조합원 대상 행사를 통해 조합원과의 소통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기 대의원 총회와 40주년 기념 사업, 생산지 견학 및 외부 교류 활동을 통해 생협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계획

향후에는 조합원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내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개선점

조합원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사전 홍보와 안내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기획관리부문 결산 및 평가

1. 기관 관리

1) 정기 대의원총회 (대면총회)

차수	일시	장소	주요의결사항
40차	2025.02.22.일 토요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5층)	.2024년 감사 보고 및 승인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5년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

2) 이사회

차수	일시	장소	주요심의안건
1차	2/5	안양 사무국 회의실	- 24년 결산(안) 및 2025년 계획(안)의 건
2차	3/26	두레연합회 화성물류센타 회의 실	- 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 환급 관련규정 제정의 건 - 특별출자금 납부방식 확정의 건 - 회원생협간 통합이사회 워크숍 개최의 건
3차	5/28	안양 사무국회의실	- 탈퇴 및 출자좌수 감소 신청 및 환급의 건
4차	7/30	안양 사무국 회의실	- 온라인지점 개설의 건 - 법인차량 구입의 건 - 통합사무국 설치·운영제안의 건
5차	9/25	의왕시 청계동 미트빌리지	- 매장 씬팅필름 교체의 건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지급 및 계약연장의 건
6차	11/26	안양 사무국 회의실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및 총회일정 확정건의 건 - 사무국 및 매장사업팀 워크숍 진행의 건 - 연말송년회 개최의 건 - 평촌점 및 영통점 매장 환경 개선의 건 - 쿠팡이츠 킷커머스 도입의 건 - 연말 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의 건
7차	12/23	안양 사무국회의실	- 25년 결산(안) 및 2026년 계획(안)의 건 - 직원 급여인상의 건

2. 조직관리

1) 조합원 확대

■ 전년대비 신규가입 조합원 증가 현황

구분	조합원 수(명)	순증가	증가율(%)
2019년	16,697	161	100.9
2020년	16,871	174	100.1
2021년	17,171	300	101.7
2022년	17,791	620	103.6
2023년	17,950	66	100.8
2024년	18,082	100	100.7
2025년	18,182	100	100.7

■ 업장별 조합원 가입현황

(단위: 명)

구분	무점포	안양	영통	평촌	천천	동탄	인덕원	매탄	명학	계
19년	74	70	84	130	126	169	118	83		854
20년	89	70	81	152	120	132	104	77		825
21년	80	126	100	121	142	125	109	97		900
22년	146	226	88	111	112	72	57	67	539	1,418
23년	208	87	71	91	103	62	40	63	67	792
24년	166	85	68	84	91	41	61	63	4	663
25년	63	21	-15	17	29	7	31	0	0	153

2) 출자금

■ 전년대비 출자금 증가현황

구분	출자금액	증가율	순증가
2019년	1,563,668,679	107.1	103,879,982
2020년	1,619,868,151	103.6	56,199,472
2021년	1,680,500,242	107.9	60,632,091
2022년	1,728,446,522	102.8	47,946,280
2023년	1,806,845,057	104.5	78,398,535
2024년	1,849,779,866	102.3	42,934,809
2025년	1,902,276,803	102.3	52,496,937

3. 대외 연대 활동

■ 두레생협 연합회

- | | | |
|------------|--------------|------------|
| -총회 | -이사회 | -실무책임자회의 |
| -생활재 선정위원회 | -두레연합 지역별회의 | -총무·회계팀 회의 |
| -그루터기사업팀회의 | -개별나눔 담당자 회의 | -DLS 운영위원회 |
| -두레플러스이사회 | | |

■ 안양시공정무역협의회

■ 수원공정무역협의회

■ 화성공정무역협의회

■ 안양지역급식네트워크

■ 수원지역급식네트워크

■ 전국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4. 기획관리활동

■ 교육부문

NO	일정	내용	교육기관	참가자
1	2025.03.01.~2024.06.30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교육	바른두레생협	전직원
	2025.11.14.~2025.12.13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교육	(주)케이넷에듀	전직원
2	2025.11.14.~2025.12.13	퇴직연금 교육	(주)케이넷에듀	전직원
	2025.11.14.~2025.12.13	개인정보보호교육외 법정교육4종	(주)케이넷에듀	전직원, 이사장
3	2025.11.01.~2025.12.31	건강기능식품교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점장 7명
4	2025.03.28.	초급 활동가 교육	바른두레생협 사무국	활동가 1명
	2025.12.03.	초급 활동가 교육	바른두레생협 사무국	활동가 3명
5	2025.4.01.~4.10 (4회)	신임임원 교육	두레생협연합회	임원 2명
	2025.09.09.~16 (2회)	신임임원 교육	두레생협연합회	예비임원 1명
6	2025.12.27	2025 체인지온컨퍼런스	다음세대재단	조직홍보직원
7	2025.04~07월 (4회)	실무책임자교육	두레생협연합회	상무이사
8	2025.09.02.	정리정돈강좌	울림생협독자	조합원 19명

5.인력현황 (2025.12.31.현재)

구분	본부	안양	영통	평촌	천천	동탄	인덕원	매탄	명학	계
8시간	5	1	1	1	1	1	1	1		12
단시간	1	4	4	4	4	2	4	2		25
23년	6	5	5	4	5	4	5	4	3	41
24년	6	4	5	4	5	3	4	4		35
25년	6	5	5	5	5	3	5	3		37

6. 총평가

•인사

- 산업안전교육 및 법정 의무교육을 전직원이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함으로써 매장별 산업안전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을 절약하였고 교육기관을 이용한 교육이 인사사회계팀의 업무를 감소시킴. 다만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집중도와 실생활 및 업무 활용성 성과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됨

- 당근플랫폼을 통한 구인은 비용이 들긴 했으나 고용24등 공공구직사이트보다 빠른 구인과 실구직인과의 면접진행으로 매장 인력확충에 도움이 되었음

•회계

- 매출 향상 및 비용 절감등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직원들에게 특별상여를 지급.
- 스토어 36.5 특화매장 지원금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금등 29,300,000원 영업외 이익 발생.
- 베이비부머 지원금 및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으로인한 고용지원금 수령.
- 40주년 기념식으로인한 특별비용과 축의금 수령으로인한 잡이익 발생.
- 천천매장 리모델링 및 평촌,영통매장의 냉장기기 구입등으로인한 자산구입비용 크게 증가.

2025년 손익계산서(안)

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정명	제 41(당)기 원화		제 40(전)기 원화	
I. 매출액		7,934,053,403		7,224,330,040
상품매출	7,934,053,403		7,224,330,040	
II. 매출원가		5,837,440,682		5,407,117,652
상품매출원가	5,837,440,682		5,407,117,652	
기초상품재고액	178,167,885		236,084,051	
타계정에서대체액				
당기상품매입액	5,890,112,688		5,370,593,409	
타계정으로대체액	12,928,691		21,391,923	
기말상품재고액	217,911,200		178,167,885	
III.매출총이익		2,096,612,721		1,817,212,388
IV.판매비와관리비		1,950,939,714		1,999,845,366
급여	834,639,190		833,056,112	
상여금	9,300,000			
잡급	1,003,000		3,130,860	
퇴직급여	79,046,951		90,551,338	
활동비	20,130,914		16,462,964	
복리후생비	78,740,383		82,646,058	
여비교통비	670,322		243,000	
접대비	797,363		712,000	
통신비	39,992,181		35,236,313	
수도광열비	89,833,232		90,603,727	
세금과공과금	2,291,920		2,883,950	
감가상각비	49,231,724		84,117,457	
지급임차료	253,786,730		259,750,000	
수선비	18,407,490		24,369,513	
보험료	9,844,849		9,421,648	
차량유지비	6,821,431		7,448,535	

계정명	제 41(당)기 원화		제 40(전)기 원화	
운반비	69,922,343		76,476,954	
교육훈련비	674,604		1,577,532	
도서인쇄비	153,220		140,900	
회의비	10,920,370		13,258,664	
소모품비	23,828,195		11,575,553	
지급수수료	331,834,560		314,629,926	
광고선전비	6,257,608		8,565,861	
판매촉진비	11,167,244		31,222,021	
대손상각비	1,643,890		1,764,480	
V. 영 업 이 익		145,673,007		-182,632,978
VI. 영업 외 수익		49,610,296		31,039,543
이자수익	244,202		204,291	
지자체보조금	29,300,000		16,8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635,364			
잡이익	10,458,825		6,072,102	
대손충당금환입	1,764,480		1,685,000	
배당금수익	214,549		143,368	
퇴직연금운용수익	5,992,876		6,134,782	
VII. 영업 외 비용		4,296,685		67,602,755
이자비용	4,062,461		4,981,140	
기부금	153,820		567,756	
재고자산감모손실			56,779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		61,543,880	
잡손실	78,404		453,200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190,986,618		-219,196,190
IX. 법인세비용	18,907,660			10,664,145
법인세비용			10,664,145	
XI. 당 기 순 이 익		172,078,958		-229,860,335

2025년 재무상태표(안)

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정명	제 41(당)기 원화		제 40(전)기 원화	
자산				
I. 유 동 자 산		652,571,898		419,100,752
(1) 당 좌 자 산		434,637,048		240,932,867
현금및현금성자산		268,827,255		63,169,237
매출채권	164,389,147		176,448,414	
대손충당금	(1,643,890)	162,745,257	(1,764,480)	174,683,934
단기대여금		1,000,000		1,000,000
미수금		98,600		119,451
선급비용		1,965,936		1,950,655
선납세금		0		9,590
(2) 재 고 자 산		217,911,200		178,167,885
상품		217,911,200		178,167,885
II. 비 유 동 자 산		1,436,659,822		1,401,419,997
(1) 투 자 자 산		972,099,288		936,884,739
출자금		972,099,288		936,884,739
(2) 유형 자산		98,090,534		98,065,258
냉동기기	261,725,861		282,358,171	
감가상각누계액(냉동기기)	(214,367,064)	47,358,797	(257,358,062)	25,000,109
차량운반구	44,006,011		60,610,967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42,690,943)	1,315,068	(58,215,402)	2,395,565
비품	81,038,387		81,038,387	
감가상각누계액(비품)	(78,289,238)	2,749,149	(75,880,447)	5,157,940
시설장치	572,292,780		558,862,780	
감가상각누계액(시설장치)	(522,169,065)		(488,848,085)	
국고보조금(시설장치)	-3,456,195	53,579,910	-4,503,051	74,517,746
(3) 무형 자산		30,000,000		30,000,000
영업권		30,000,000		30,000,000
(4) 기타비유동자산		336,470,000		336,470,000
임차보증금		335,000,000		335,000,000
기타보증금		1,470,000		1,470,000
자 산 총 계		2,089,208,070		1,820,520,749

계정명	제 41(당)기 원화		제 40(전)기 원화	
부 채				
I. 유 동 부 채		625,108,461		590,176,548
미지급금		111,375,721		92,832,836
예수금		1,991,890		1,248,010
미지급법인세		18,884,010		
미지급비용		3,940,896		2,256,185
선수금		28,218,693		37,742,801
포인트충당부채		1,801,922		2,387,992
매입채무		458,895,329		453,708,724
II. 비 유 동 부 채		153,612,286		144,432,773
장기차입금		150,000,000		1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31,893,174		189,078,161	
퇴직연금운용자산	(228,280,888)	3,612,286	(194,645,388)	-5,567,227
부 채 총 계		778,720,747		734,609,321
자 본				
I. 자 본 금		1,902,276,803		1,849,779,866
조합원출자금		1,902,276,803		1,849,779,866
II. 자 본 잉 여 금				
III. 자 본 조 정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 익 잉 여 금		-591,789,480		-763,868,438
법정적립금		4,384,858		4,384,858
미처분이익잉여금		-596,174,338		-768,253,296
당기순손익	172,078,958		-229,860,335	
자 본 총 계		1,310,487,323		1,085,911,428
부채와 자본 총계		2,089,208,070		1,820,520,749

복 지 기 금

■ 복지기금 현황

구분	기금 입금			기금지출	잔액	비고
	조합원	기타	계			
2011.08~12	690,000	32,000	722,000		722,000	
2012	5,744,000	2,143,743	7,887,743	1,263,629	7,346,114	
2013	6,040,000	2,060,119	8,100,119	658,100	14,788,133	
2014	5,578,000	1,176,075	6,754,075	1,442,000	20,100,208	
2015	4,941,000	1,440,265	6,381,265	900,000	25,581,473	
2016	8,598,027		8,598,027	4,373,127	29,806,373	
2017	1,850,595	878,080	2,728,675	5,285,000	27,250,048	
2018	1,950,000	58,465	2,008,465	2,060,456	27,198,057	
2019	2,151,840	166,104	2,317,944	4,206,390	25,309,611	
2020	1,493,000	75,000	1,568,000	2,627,610	24,250,001	
2021	1,571,000	164,000	1,735,000	9,175,955	16,809,046	
2022	1,922,000	2,328	1,924,328	4,239,593	14,493,781	
2023	1,543,000	300,032	1,843,032	2,857,810	13,479,003	예금이자 13,552원 포함
2024	1,235,000	133,178	1,368,178		14,847,181	예금이자 13,178원 포함
2025	1,092,000	12,857	1,104,857		15,952,038	예금이자 12,857원 포함
누계	46,399,462	8,642,246	55,041,708	39,089,670		

-도움을 주시는 분-

박미자, 이인영, 김금난, 이미현, 이경숙, 남양선, 하은숙, 이화정, 강은미, 박윤순, 함연주, 김정순, 서원미, 정혜경, 이경미, 정미희, 주연섭, 윤형미, 구선욱, 이정우, 권애경, 이정미, 이정혁, 배경선 (2024년 12월 기준)

2025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안)

I. 이익 잉여금 처분(안)

사업년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1. 처리 전 손실금 : -596,174,338원
 - 전기 이월 손실금 : -768,253,296원
 - 당기 순이익 : 172,078,958원

2. 처분(안)

이월 손실금과 당기순이익의 합 -596,174,338원을 2026년으로 이월한다.

제3호 의안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2026년도 공통 슬로건

“나와 이웃, 지구를 이어주는 두레생협”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 매장사업부문 계획

1. 사업목표

- 경영안정화 및 지속가능함을 위한 사업부문 강화

2. 핵심과제

- 월별 매장행사 및 매출확대주간 활성화
- 할인지원제도에 대한 연계기획 준비
- 매장업무표준화시스템 도입
- 무점포 기획 확대
- 생협 이용기회 확대
- 부실매장 관리

3. 핵심과제별 주요사업

- 1) 월별 매장행사 및 매출확대주간 활성화
 - 매월 1개매장 순차적 주년행사 실시
 - 주년행사와 연계한 전매장 매출확대 주간 실시
 - 주년행사 매장 행사 중 신규조합원, 책임조합원 확대 병행
 - 생산자 방문 및 조합원체험 동시 기획
- 2) 할인지원제도에 대한 연계기획 준비
 - 정부지원 또는 지자체 지원 할인지원제도 정보 공유
 - 전략기획회의를 통해 집중생활재 선정 및 확보
 - 조합원 방문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3) 매장업무표준화시스템 도입
 - 매장업무 간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
 - 자체표준화 전략 마련
 - 두레생협연합회의 매장상향표준화 전략과 연계
 - 실시상황 점검 및 상벌 부여

- 4) 무점포 기획 확대
 - 두레생협연합회 온라인사업팀과 연계한 사업기획 마련
 - 그루터기 매장사업과 연계한 무점포 동시 기획 실시
 - 무점포 조합원 관리 체계 마련

- 5) 생협 이용기획 확대
 - 생협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이용 혜택 제도 마련
 - 농식품 바우처, 어르신, 임산부 등에 대한 이용 정책 홍보
 - 지역사회와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책 사업 실시

- 6) 부실매장 관리
 - 장기 적자누적매장에 대해 관리 전략 수립 및 실행
 - 매장별 환경분석 및 핵심과제 도출
 - 부실매장의 손익구조 개선전략 실행

4. 매출목표

- 총매출 목표 : 8,000,000,000원
- 매장매출 목표 : 7,050,000,000원-> 전년대비 1% 인상분 반영
- 무점포매출 목표 : 950,000,000원-> 전년대비 0.6% 인상분 반영
- 마진율 목표 : 25.5% 달성!
- 매장별 매출 목표

	매장	2025년 매출액	2026년 목표액	2025년 가입조합원	2026년 가입목표
1	안양점	1,022,453,709	1,030,000,000	93	150
2	영통점	1,259,779,173	1,270,000,000	63	150
3	평촌점	1,259,174,748	1,260,000,000	89	150
4	천천점	1,087,942,300	1,050,000,000	114	150
5	동탄점	649,585,905	710,000,000	59	125
6	인덕원점	1,023,372,364	1,020,000,000	86	150
7	매탄점	684,375,925	710,000,000	64	125
8	무점포	949,369,179	950,000,000	177	200
합계		7,934,063,403	8,000,000,000	745	1200

5. 월별기획

1) 집중생활재 기획

월	내용	월	내용
1월	겨울방학 간편식 건강식품 *월간기획-한우찜갈비, 굴비	7월	초복/중복기획(전복/제주촌닭/민물장어) 여름보양식, 여름과일 기획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2월	설선물세트 및 명절성수품 기획 울릉도고로쇠예약, 정월대보름음식, 메주 *월간기획-싱싱수산물	8월	말복기획(햇고춧가루/제주촌닭/민물장어) 여름보양식,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3월	신학기 및 환절기대비 환절기건강식품, 봄나물 기획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9월	추석선물세트 기획, 한우찜갈비/굴비 사회적경제기업 생활재 기획전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4월	햇산양삼, 봄나물, 햇참외 및 햇과일 봄맞이 이불 행사 (코잠 광목이불)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10월	김장(절임배추/젓갈류/천일염) 예약 *생명나눔한마당 행사 생활재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5월	가정의 달 기획 행사 (선물세트 기획)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11월	김장(절임배추/젓갈류/천일염) 집중기획 완성김치, 햇건구기자, 수능기획생활재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6월	하지감자/청매실/블루베리 등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12월	건강기능식품/크리스마스 케익/와인 판매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2) 월별행사 기획

월	내용	월	내용
1월	-평촌점 리뉴얼 행사	7월	-초복/중복 기획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2월	-설명절 행사 -대보름 행사 -총회기념행사	8월	-말복기획행사 -천천점주년행사
3월	-신학기 기획행사/봄맞이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안양점주년행사	9월	-추석 명절 행사 -인덕원점주년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4월	-조합원확대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코잡 이불 등)행사 -동탄점주년행사	10월	-생명나눔 한마당 행사
5월	-책임조합원확대 및 감사행사 -사회적경제기업 생활재 특별 행사 -영통점주년행사	11월	-매탄점주년행사 -조합원 확대 행사 -김장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6월	-연합회 권역별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평촌점주년행사	12월	-연합회 권역별 행사 -조합원 감사행사/책임조합원 감사행사 -송년새해맞이행사

2026년 조직홍보부문 계획

1. 사업목표

- “조합원과 함께, 사람이 모이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만들기”

2. 핵심과제

- 조합원 활동 강화
- 책임조합원 확대 운동 전개
- 조합원 소통채널 강화
- 조합원 관리 체계화

3. 핵심과제별 주요사업

- 1) 조합원 활동 강화
 - 매장별 생산지 방문 (조합원과 직원 동반 참여 유도)
 - 매장별 연 1회 생산지 방문 의무 시행 도입
 - 매장별 소모임 활성화
 - 위원회 개발 및 조합원 교육 실시(식생활, 생활재 교육)
- 2) 책임조합원 확대 운동 전개
 - 전사적 책임조합원 확대 운동 실시
 - 전매장 동시 참여 행사 실시
 - 매장 주년행사 시 행사매장별 책임조합원, 신규조합원 확대 기획
 - 책임조합원의 활동 무대 마련
 - 책임조합원 대상 조합원 활동 기회 부여
 - 책임조합원 확대를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
- 3) 조합원 소통 채널 강화
 - 밴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조합원 소통채널 확보
 - 조합원간, 조합원과 매장의 소통 창구 개발
 - SNS채널을 통한 매장별/구역별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
- 4) 조합원 관리 체계화
 - 충성조합원 관리 (‘바른지킴이’ 제도 활성화)
 - 기존 충성조합원 유지 및 매출 확대 기여
 - 신규조합원 확보 전략 강화
 - 매장 행사와 연계한 신규조합원, 책임조합원 확대 운동 전개

4. 주요 활동 계획

1) 조합원활동 부문

목 적	활 동 명	활 동 계 획
조합원 활동 강화	조합원만남	- 제목: 신규조합원 만남 - 횟수: 4회 - 방법: 신규조합원과 함께하는 생산지 견학(회비 없음)
		- 제목: 생산자 온라인 강좌 - 횟수: 4회 - 장소: 온라인 (Zoom)
		- 제목: 식생활 강좌 - 횟수: 4회 - 장소: 안양 2회, 수원 2회
	요리공모	- 생활재 활용 레시피 소개 - 횟수: 6회 - 방법: 조합원에게 메인재료 제공 후 요리 밴드 업로드
	생산지 방문	- 제목: 생산자 방문 및 체험 (매장별/권역별 방문) - 횟수: 8회 - 장소: 부림제지, 미디안농산, 산안마을 등
소모임	- 제목: 영어, 트레킹, 공정무역 캠페인 등 - 횟수: 주제별 상이 - 장소: 조합원 공간 및 오프라인 선정장소	
위원회활동	생활재위원회	- 제목: 신규생활재 검토 - 횟수: 11회 (추석달 연합회에서 진행안함) - 장소: 매탄점 조합원 공간
	일본생활클럽 교류준비위원회	- 제목: 일본 생활클럽 교류 준비 - 횟수: 3회 - 장소: 사무국 회의실
	공정무역활동 실행위원회	- 제목: 안양공정무역협의회 활동 관련 협의 및 집행 - 횟수: 12회 이상 (매월1회 이상) - 장소: 사무국 회의실
교육활동	임원 역량강화	- 임원 역량 강화 교육
	직원 역량강화	- 매장 근무자 역량 강화 교육 - 전직원 대상 생협 연대의식 강화 교육 - 직원 전문화를 위한 컨퍼런스, 세미나 참여 기회 확대
	연합 등 교육(외부)	- 임직원, 식생활, 공정무역, 기후위기관련 교육

2) 홍보활동 부문

구분	대상	활동내역 및 계획	
온라인 활동	조합원	홈페이지, 밴드	- 조합원 활동소식 - 생산자 온라인 만남 - 다양한 캠페인 활동 홍보 - 총회 등 중요공지 - 요리 레시피 게시
		카카오톡	- 매장별 중요 소식 - 조합원 참여 알림(월/달력) - 매장활동 및 조합원활동 소개
		인스타, 블로그	- 신규 생활재 소개 - 환경 캠페인 등 안내 - 요리 레시피 게시 - 지역정보, 관심정보 공유
대면 활동	조합원	- 신규조합원 확대, 책임조합원 확대 운동 - 책임조합원, 복지기금 안내 - 매장관련 이벤트 홍보 콘텐츠 지원 - 조합원 활동 관련 홍보 및 안내지 배포	

3) 연대활동 부문

(1) 지역연대활동

- 안양시 공정무역 협의회
- 수원시 공정무역 협의회
- 화성시 공정무역 협의회
- 안양시 식생활 네트워크
- 수원시 식생활 네트워크
- 전국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 한마당 축제 행사
- 안양시민 연대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먹거리생협네트워크 협의회
-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
- 전국 먹거리 연대
- 기타 활동

(2) 두레생협연합회 연대활동

- 두레생협연합회 총회
- 이사회
- 지역별 회의
- 실무책임자 회의
- 생활재 선정 회의
- 총무·회계담당자 회의
- 조직홍보 담당자 회의
- 개별나눔 실무 회의
- 그루터기 실무 회의
- 기타 활동

(3) 공정무역활동

- 공정무역 전문가 양성
- 공정무역 인식개선 교육
- 공정무역제품 제품 진열 홍보
- 공정무역 거리 캠페인
- 공정무역 시민단
- 공정무역 교육 (학교, 단체, 조합원 등)
- 공정함을 열다
- 기타 활동

(4) 기후위기캠페인

- 식생활 채식 강의
- 병뚜껑 수거 재활용
- 멸균팩, 우유팩 모으기
- 에너지 절약 캠페인
- 제로웨이스트 운동
- 기후위기 관련 강의
- 기타 활동

(5) 국제교류

- 일본 생활클럽 가나가와 생협 교류 활동 - 2026년 일본 생협의 한국 방문의 해 준비
- 일본 코프아이치 및 기타 생협과의 실무자 연수 확대

2026년 기획관리부문 계획

1. 기관 운영

- 1) 이사회
 - 홀수달 이사회 개최
 - 의안심의 및 조합원 소모임 활동 확대
 - 다양한 의견 수렴
- 2) 감사
 - 연 2회 사업과 활동, 회계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감독 및 지도

2. 조직 관리

■ 조합원 신규가입

	26년 목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입 조합원수	1,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조합원 연대의식 강화

- 생산지 방문, 각종 소모임, 교육등의 조합원 행사를 통한 조합원 활동강화
- 책임조합원 확대 운동
- 조합원 소통 채널 강화(밴드, 카카오톡등 sns활용)
- 조합원 관리 체계화(충성조합원 및 신규조합원 확대 및 관리)

3. 대외 연대 활동

■ 두레생협 연합회

- | | | |
|------------|--------------|------------|
| -총회 | -이사회 | -실무책임자회의 |
| -생활재 선정위원회 | -두레연합 지역별회의 | -총무·회계팀 회의 |
| -그루터기사업팀회의 | -개별나눔 담당자 회의 | -DLS 운영위원회 |
| -두레플러스이사회 | | |

■ 안양시공정무역협의회

■ 안양지역급식네트워크

■ 수원공정무역협의회

■ 수원원지역급식네트워크

■ 화성공정무역협의회

■ 전국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4. 인사 총무 회계

1) 경비절감

- 세부적인 예산계획을 통해 생협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 각종 지원사업과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영업외 수익창출을 도모 (공모사업등)

3) 성과급 지원체계 마련

- 직원들의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지급
- 동기부여

3) 교육

(1) 두레연합 교육

- 책임 실무자 교육
- 초급 실무자 교육
- 임원 교육

(2) 법정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내 괴롭힘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산업안전보건 교육

(3) 기타

-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 신입 직원 및 기존 직원 교육
- 인재 개발 육성 교육등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가

2026년 예산계획(안)

1. 예산총칙

제1조: 본예산 회계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2026년 예산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수입총액: 2,040,000,000원

-지출총액: 2,018,919,379원

-수지총액: 23,718,821원

제3조: 수입 및 지출명세는 다음 수지(안)과 같다

제4조: 예산의 집행은 당해 연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목간이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예산의 항간이용과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량의 증가, 세율변경, 급격한 물가변동, 특별사업의 실시, 조직체계 및 기구의 변경 기타 대내외 지원금 등으로 인한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할수 있다.

제8조 추가 경정 예산은 한정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2026년 회계연도 차입금 최고한도는 3억 원으로 한다.

2025년 총괄 수지예산(안)

계 정 명	2025년 결산(확정)	2026년 예산(안)	2025 대비율	비고
I. 매 출 액	7,934,053,403	8,000,000,000	101%	
II. 매 출 원 가	5,837,440,682	5,960,000,000	102%	매출대비 74.5%
III.매 출 총 이 익	2,096,612,721	2,040,000,000	97%	매출대비 25.5%
IV.판매비와 관리비	1,950,939,714	2,018,919,379	103%	매출대비 25.7%
급여	834,639,190	897,090,790	107%	직원 인건비
상여금	9,300,000	19,600,000	211%	직원 상여 및 성과금
잡급	1,003,000	216,720	22%	알바 및 일일체험자 급여
퇴직급여	79,046,951	75,550,190	96%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
활동비	20,130,914	22,510,000	112%	조합원활동 증대
복리후생비	78,740,383	86,906,050	110%	직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여비교통비	670,322	250,000	37%	
접대비	797,363	628,000	79%	
통신비	39,992,181	40,114,200	100%	매장홍보문자의
수도광열비	89,833,232	91,673,640	102%	매장 전기료및관리비등
세금과공과금	2,291,920	2,687,980	117%	건축법이행강제금등

계 정 명	2025년 결산(확정)	2026년 예산(안)	2025 대비율	비고
감가상각비	49,231,724	52,200,000	106%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253,786,730	257,550,000	101%	매장 및 사무실 임차료
수선비	18,407,490	10,100,000	55%	집기비품 및 노후시설수리
보험료	9,844,849	10,671,421	108%	산재보험·차량 및 매장관련보험
차량유지비	6,821,431	7,058,000	103%	회사차량주유비등
운반비	69,922,343	73,644,000	105%	매장배송기사 급여외
교육훈련비	674,604	4,160,000	617%	직원직무교육외(매장직원교육)
도서인쇄비	153,220	460,000	300%	총회 자료집 발간, 명함등
회의비	10,920,370	12,146,000	111%	이사회 회의비 , 직원회의비
소모품비	23,828,195	14,649,100	61%	매장사용 및 각종소모품
지급수수료	331,834,560	321,020,888	97%	물류대행 및 카드수수료
광고선전비	6,257,608	6,951,500	111%	연합홍보비외
판매촉진비	11,167,244	11,080,900	99%	판매촉진활동(포인트지급)
대손상각비	1,643,890		0%	
V. 영 업 이 익	145,673,007	21,080,621	14%	
VI. 영업 외 수익	49,610,296	10,080,000	20%	
이자수익	244,202	130,000	53%	
지자체보조금	29,300,000	0	0%	
유형자산처분이익	1,635,364	0	0%	
잡이익	10,458,825	3,810,000	36%	
대손충당금환입	1,764,480		0%	
배당금수익	214,549	140,000	65%	
퇴직연금운용수익	5,992,876	6,000,000	100%	
VII. 영업 외 비용	4,296,685	5,095,983	119%	
이자비용	4,062,461	3,895,983	96%	
기부금	153,820	100,000	65%	
재고자산감모손실		1,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	0	0%	
잡손실	78,404	100,000	128%	
VIII.법인세차감전이익	190,986,618	26,064,638	14%	
IX.법인세비용	18,907,660	17,188,796	14%	
X.당기순이익	172,078,958	23,718,821	14%	

2. 자본(조합원출자금)예산안

*2025년 조합원 출자금(자본금) 변동현황

내역	금액		비고
이월잔액	1,849,779,866		2024년12월31일 기준
탈퇴	-103,592,312		
가입	19,560,000		
책임출자금총액	32,146,479		
(직원)		10,070,000	
(조합원)		21,399,579	
이용	86,739,800		
단협이관	8,080,842		
잔액	1,892,714,675		2025년12월31일기준

*2026년 자본(조합원 출자금)예산안

항목	산출근거	예산안	산출근거
조성		111,720,000	
출자금	조합원신규가입	36,000,000	조합원신규가입 (월 100명*12개월*30,000)
	조합원탈퇴	-60,000,000	조합원탈퇴 및 감자 (월 500만원*12개월)
	이용 출자금	96,000,000	출자금 의무증자 (월800만원*12개월)
	책임출자금		9,720,000
		30,000,000	조합원책임출자금 /책임출자운동예정 (월 250만원*12개월)
운용		75,688,000	
시설투자	냉장기기	20,000,000	동탄,매탄 냉장고 교체 각 1000만원
연합출자금(물류센터)		35,000,000	월 350만원*10개월
		20,688,000	월 1,724,000*12개월

제4호 의안

2026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I. 차입금 최고한도액(안)

1. 제안사유

-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차입금 최고한도액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1-1. 관계조항

- 정관 제 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0-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2026년도 차입금 최고한도액을 3억원으로 한다.

제5호 의안	임원선출 및 승인의 건
---------------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임원선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42조(임원의 정수)

-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5인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회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

- 이사 : 8명
- 감사 : 2명
- 사유 : 임원의 임기 만료

■ 임원 입후보 (이사 후보)

기호	성명	지원포부
1	김란희	지금까지 참여했던 다수의 조합원활동 경험을 살려 많은 조합원님과 다양한 생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박선희	바른두레생협의 이사로서 생협과 종사자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신동석	오랫동안 생협의 조합원 및 감사로서 활동했던 경험으로 바른두레생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신연홍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성화하여 조합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며 매출증대에 기여토록 활동하겠습니다.
5	신동녀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른두레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이상영	지역에서 생명운동의 가치를 확산시켜가기 위해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	주선미	생활재위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조합원활동에 참여하고 바른두레생협이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한대건	바른두레생협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협동조합안에서 바른두레생협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임원 입후보 (감사 후보)

기호	성명	지원포부
1	임상옥	새협의 회계 및 세무 업무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새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전준범	바른두레생협의 사업이 조합원에게 유익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바른두레생협의 사업진행이 법령, 정관, 규약 등에 비추어 적법하고 타당한지 성실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 제9조)
제2장	조합원 (제10조 ~ 제16조)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 ~ 24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 ~ 제43조)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 ~ 제56조)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7조 ~ 제59조)
제7장	회 계 (제60조 ~ 제64조)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5조 ~ 제68조)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바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1-32번지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경기도와 서울시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가 포함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신설)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다시 가입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 여부 또는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신설)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④ (신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일자가 속한 월의 6개월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0,000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신설)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이용출자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출자의 금액 및 방법,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⑥ (신설) 수매, 홍보, 시설투자,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문화, 환경 사업, 성평등사회 조성 등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 사업 및 생협운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목적에 위한 특별출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2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

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신설) 조합원이 공급, 매장 이용 시 발행되는 공급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제1항 각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신설) 공급수수료(또는 배송수수료)

2. (신설) 행사참가비

3. (신설) 가입비

4. (신설) 기타 조합 운영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제반 경비로 이사회에서 정한 것

② 조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법정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20분의 1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3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또는 SNS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총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2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신설) 제2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총회 전에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⑥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 ⑦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이 제33조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 ② 제33조제5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33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 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④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제33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②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설) 조합은 연합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의 총회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회가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한 경우로서 총회의 의사록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 의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2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3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추가 보완)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

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조합의 사업상의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하며 이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사본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7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추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10. (추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11. (추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2. (추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취약계층 지원 및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복지, 환경, 문화 사업
13. (추가) 성평등 문화 확산, 인식 개선, 여성인권 향상 등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14. (추가) 조합원의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식생활교육 및 외식사업
15. (추가)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사업 및 복지사업
16. (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과 영유아보육사업
17. (추가) 그 밖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7.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신설) 협약에 의해 상호 이용을 약속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0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5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6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8조(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총회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대 의 원 선 출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또는 구성원 단위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원단위 (또는 구성원 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다만 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은 예외로 한다.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회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임원 선거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3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 ④ 1항의 후보자격심사시 이사후보자의 자격은 가입기간 2년이상과 생협의 주요 운영 및 활동에 1년이상 참여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후보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 및 3항에 따른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 ⑤ 전형위원회는 임원의 결원이 있을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전형 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4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제 제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8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감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3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4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5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6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18조 3항으로 이전

제27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8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설치.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출자좌수 감소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0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1좌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잉여금배당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2조 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액이 결정기준)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조(배당계산자료) 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 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출자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로 매월말 출자잔액을 1좌금액으로 나누어 월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월좌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출자배당금액을 총 월좌수로 나누어 1월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좌수에 1월좌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계산한다.

제7조(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을 합하여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을 산출한다.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연간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배당금을 계산한다.

제8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써 배당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승인이후 차기 총회부터 시행한다.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할 때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변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에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승인 이후 차기 총회부터 시행한다.

바른두레생협 매장

안 양 점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84 마인빌 108, 109호
031) 468-2800

평 촌 점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 383-6625

인덕원점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 426-6662

영 통 점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 273-1258

천 천 점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 269-6625

매 탄 점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 213-3309

동 탄 점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 8003-4433